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안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등을 추가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안 제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추가

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공고 및 공모절차(안 제5조, 제6조)

1) 환경부장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공모기간, 설치희망

부지의 요건 등을 설치·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모지역이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지후보지로 선정

라.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1) 입지선정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설치·운영기관 임직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
- 2)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선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

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안 제10조)

- 1)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운영기관은 동 내용을 공고
- 2)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 제출 가능

바. 시설 입지 안의 주민의 생활기반상설에 따른 지원기준 등(안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현재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안 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안 제16조)

- 1)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배분·적립,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
- 2) 설치·운영기관이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설치·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자.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안 제18조)

기금수혜지역의 설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 가능

차.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안 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 구성

카.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 대상 등(안 제21조)

기금수혜지역에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운영이익금 지급

타.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

- 1) 투자참여지역의 범위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읍·면·동 또는 그 밖의 읍·면·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
- 2)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분 참여 또는 채권 발행, 기타 계약의 방법으로 투자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투자금 모집 가능

파. 운영이익금의 배분 등(제24조)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그 사용용도는 별표 3에 따름

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사용(제25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 적용 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
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또는 가공제품의 부분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의 공모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는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구비서류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②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지후보지 공모 내용에 따라 설치·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의회에 즉시 통보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응모 지역이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지후보지로 선정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응모한 지역이 없는 경우 또는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기관이 공고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부지면적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
2. 그 외 설치·운영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제8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의 선정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위원장의 선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2항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
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0조(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설치·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제7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3.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13조(시설 입지 안의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현재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설치·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

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제1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의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하는 금액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3. 설치·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② 설치·운영기관이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처리대상폐기물을 반입할 때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 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해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운영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기금수혜지역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설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치·운영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이주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설치·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3. 법 제32조에 따른 편익시설의 설치

4. 녹지(綠地)

제20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21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주민에 대한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 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이주지역 안의 거주 주민이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하여 주소 또는 체류지가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익배분금은 세대별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기금수혜지

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수혜지역 운영이익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2조(투자참여지역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이란 제18조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읍·면·동 또는 그 밖의 읍·면·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투자금 모집이 저조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3조(주민투자에 관한 사항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분 참여 또는 채권 발행, 기타 계약의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주민편익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자금의 한도는 세대당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운영기관이 결정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금의 구체적인 모집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그 사용용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사용)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운영기관이 배분한 운영이익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지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편익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7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③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공공폐자원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설치·운영기관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공공폐자원의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1일 평균 공공폐자원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자원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한 공공폐자원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 그 밖에 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제28조(측정결과 등의 공개)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설치·운영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2.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제29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9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주기·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사항의 시행방식) 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지원 사항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 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2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전체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는 경우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말한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결정을 하려는 경우 기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8조제1항 관련)

입지후보지	위촉기준
가. 둘 이상의 지역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 설치·운영기관 임직원: 1명(설치·운영기관이 지정된 경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1명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1명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2명 ○ 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1명 ○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나. 하나의 지역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 설치·운영기관 임직원: 1명(설치·운영기관이 지정된 경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2명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1명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 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2명 ○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주민대표는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입지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킨다. 다만,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주민협의체의 구성방법(제20조제1항 관련)

1. 주민협의체의 정원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1명 이내로 하며, 그 미만인 경우 15명 이내로 한다.

2. 주민협의체의 위원

주민협의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24조 관련)

1. 산정방법

가. 운영이익금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총수익”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및 기타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총비용”은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또는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제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 반입수수료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배분방법

가. 설치·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다음 표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한다.

배분 대상(법 제31조제1항 각호)	배분비율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해야 할 금액	100분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할 금액	100분의 10 이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100분의 40 이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100분의 20 이내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배분비율의 합은 100분의 40에 [1-공제율]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내 거주 세대에 대한 배분해야 할 금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내 주민투자자에 대한 배분해야 할 금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의 총 배분비율의 합의 범위 내에서 각 배분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3. 유보금은 주민투자금 반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사후관리 및 대수선, 운영손실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적립·사용해야 한다.

4. 설치·운영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이익금의 산출 및 배

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71